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2025년 6월)

목 차

I. 주요 심결례

1.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1

Ⅱ. 최신 판례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주요 심결례

1.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¹⁾

가. 법 위반 내용

- □ (개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목재펠릿2)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
 - *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이하 '㈜' 생략)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3개 사업자는 폐업
- □ (합의 내용) 4개 목재펠릿 판매 사업자들은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 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함
- □ (합의 실행) 입찰이 공고되면 아시아에너지의 팀장이면서,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 미래바이오의 대표이사,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발인이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공동으로 산정하여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함으로서 이를 실행

나.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	-------	---	-------	----	-----	------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4억 1,500만 원 부과, 개인 고발*

¹⁾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 5. 27.) 참조

²⁾ 목재펠릿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하여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이다.

* 피심인들 간의 담합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보고서를 수령한(2024. 4. 23.) 후,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회피하고자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법인에 대한 폐업(2024. 6. 7.)을 주도한 점을 감안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 이번 조치는 발전사들의 목재펠릿 구매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찰 담합에 참여한 판매업체를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 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Ⅱ 최신 판례

- 1. 최신 고등법원 판결(2025. 5. 28. 선고 2021누74824, 미확정)
 - 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원고: ㈜ □□□□□□ -

가. 그간 경과

- □ (법 위반 행위)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
 - 원고 등 7개 삼계 판매사업자*는 2011. 7월부터 2017. 7월까지 삼계
 (삼계탕용 닭고기)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고 실행
 - * ㈜동우팜투테이블,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참프레
 - **(가격합의)** 원고 등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
 - *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시세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
 - · ① 삼계 판매가격을 직접 합의하기도 하고, 그 구성요소인 ②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나 ③ 원고 등이 적용하는 할인금액을 합의하기도 함
 - (출고량 합의) 원고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합의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함
 - ·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여 사육 단계부터 **마릿수**를 **감소**시키거나, 도계^{**} 완료 후 판매 직전 단계에서 **냉동비축량**을 **증가**시켜 시장에 유통되는 **신선육** 공급량을 **감소**시키기로 합의
 - *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하며, 입식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남
 - ** 생닭을 도축하여 내장·부산물을 제거한 후 식용 가능한 상태의 신선육으로 만드는 작업

- □ (공정위 처분) 시정명령, 과징금(전체 251억 39백만원, 원고 4,389백만 원)
- □ 소송 진행 결과
 - ㅇ 2021. 12. 13. : 원고 소 제기
 - ㅇ 2025. 4. 9. : 변론종결
 - 2025. 5. 28. : 고법 판결 선고(위원회 **승소**)

나. 고법 판결 주요내용

- ◇ 원고가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25.5.28.)
- 1)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존재 여부
- □ (원고 주장) 이 건 공동행위는 삼계 판매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립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진행되었고, 닭고기의 경우 돼지 등과 달리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기준가격 합의가 불가피하였으며, 사육농가의 소득 안정화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존재하므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 (판단)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모두 인정됨
 - 원고 등의 국내 삼계 판매시장 점유율은 약 93.2%(17년 도계량 기준)이므로, 이 건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큰 반면 경쟁촉진 효과는 거의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
 - 육계협회 고시 시세가 삼계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원고 등은 대부분 육계협회의 회원사들로서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 협회의 시세 조사에 응답함으로써 기준가격을 조절한 점, 삼계 신선육은 대부분 국내 생산.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때, 이 건 행위가 국내 삼계 판매시장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 등이 작성한 회합 문서에 '전년 대비 삼계 입식이 줄어서 전체 유통물량이 없고 DC 폭이 줄어들고 실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등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행위가 실제로 판매가격 상승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이 건 행위가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기초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거나 친경쟁적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능가할 정도로 매우 커서
 이 건 행위의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건 행위로 인해 삼계 신선육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 되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축산농가의 소득이 보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사육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위탁 사육농가의 경우 사육량이 감소하면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원고 등이 작성한 회합 문서 및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등의 임 직원이 이 건 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수익성 문제', '삼계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함', '삼계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이라고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이 건 행위는 원고 등의 **사업경영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행위는
 원고 등의 이윤 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등은 농림부의 2013년경 **행정지도가 있기 전인 2011. 7.경부터** 이미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조절**해왔음
- 농림부 회신에 의하더라도 **농림부가 이 건 행위를 직접 지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해 피고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농림부는 피고에게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농림부의 행정지도

인 것처럼 주장하나, 위 협의회는 축산계열화법 제5조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권한 있는 자'라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협의회에서 논의된 수급조절 대상은 육계였고 논의사항 중 이 건 행위와 일치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1항,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제1호 및 제5호는 조직법적 근거에 불과한 점, 이 건 행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유통조절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전 단계로서 농림부가 피고와 협의를 거친 바도 없는 점, 2020. 3. 24. 법률 제17099호로 개정된 축산법 제32조의4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정 내용은 2011. 7월부터 2017. 7월까지 이루어진 이 건행위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들고 있는 법령규정들만으로 이 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하나의 공동행위 해당 여부

- □ (원고 주장) 개별 회합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참석자, 합의 내용 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판단) 이 건 행위는 성수기 및 비수기의 과열경쟁을 막고 삼계의 적정 가격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마진을 얻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삼계위원회 내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합의가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함
- 3)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장기간 고정단가 계약 관련〉

□ (원고 주장) ① 장기간 고정단가 계약은 이 건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위 계약으로 인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 ② 이 건 행위 종기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은 이 건 위반행위 기간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 □ (판단) 장기간 고정단가 계약의 단가는 계약 체결 무렵 시세 등을 반영 하여 책정되므로 이 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은 이 건 행위 종기 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품질이 저하된 등외품 거래 관련〉

- □ (원고 주장) 이 건 관련시장은 삼계 신선육 중 정상품 판매시장이므로, 등외품 거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 (판단) 등외품은 일반 삼계 신선육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품질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특히 출고량 합의는 삼계 신선육 제품뿐 아니라 등외품의 공급량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외품도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격담합은 등외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계열화업체 간 거래 관련〉

- □ (원고 주장) 계열화업체 간 거래는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의 수요 자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공급자들 사이에 부족한 물량을 교환 하는 것으로 이 건 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
- □ (판단) 계열화업체 간 거래 역시 이 건 행위를 통해 형성된 판매가격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특정 계열화사업자와 전속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열화사업자로부터도 삼계 신선육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공급가격도 담합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